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 (주소창입력) www.nims.or.kr
- (포털검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NIMS



□ “회원가입” 메뉴 접속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서 상단의 ‘회원’을 선택한 후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



□ “업체사용자(기관관리자)” 가입 절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입

- 회원가입 기간 : 2018. 3. 2 ~ 계속
가급적 시행일 전까지 회원가입 및 승인(연계보고를 할 경우에도 회원가입은 필수)
- 법인/개인/심평원 공인인증서 모두 등록 가능
- 개인사용자의 경우 복수의 업무 담당자 가입 가능



- 업체사용자 가입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승인.
- 업체사용자 가입 승인 후 보고실무자가 개인사용자 가입.
- 업체사용자가 로그인하여 개인회원 가입을 승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체(기관)사용자 가입

- 취급내역 보고 대상업체의 업체(기관)사용자 가입신청은 업체 대표자가 등록 및 관리하는 것이 원칙
- 대표자는 관리담당자(마약류취급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담당자) 지정하여 업체사용자 가입 가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체(기관)사용자 제출(첨부) 증빙서류

구분	세부구분	첨부파일명
제조, 수출입,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도매업자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의료업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 의료기관 포함)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원, 치과의원 (부속 의료기관 포함)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소매업자	약국	약국개설등록증
학술연구자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자	-	취급승인 허가공문,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용자” 가입 절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인사용자 가입

- 사용자 구분 “개인사용자”, 업체기관선택 조회하여 소속 업체(기관)명 선택
- 개인회원 정보를 입력 후,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

휴대폰 본인인증 공공아이핀 본인인증

1. 사용자 구분 선택 (개인사용자)

2. 업체(기관) 선택

3. 인증 방법 선택 (공공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인사용자 가입

-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가입.

1. 사용자 정보 입력

2. 인증서 등록

3. 인증서 입력 (전자서명)

4. 가입 완료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란?
답변	<p>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로회복주사로 투약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엄격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p> <p>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기존 ‘기록·보관의무’에서 ‘취급내역 전산보고’ 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p> <p>이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도매상, 병·의원, 약국,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취급자와 공무상 마약류사용자 등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입·수출, 제조·사용, 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하여야 합니다.</p>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p>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로회복주사(수면마취제), 공부 잘하는 약(각성제), 살 빼는 약(식욕억제), 데이트 강간약 (수면제, 근육이완제 등) 등 그릇된 약물 사용과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등 약물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건강을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p>

질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란?
답변	<p>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입니다.</p>

질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답변	<p>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보고의무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p> <p>원활한 보고제도 시행을 위하여 회원가입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도 시스템 사용연습 등을 위해 개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www.nims.or.kr)을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p> <p>참고로, 2015년과 2016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의 경우 기존 회원가입 정보는 삭제되었으므로 재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질문	업체회원과 개인회원은 어떻게 구분되어 가입하나요?
답변	<p>업체(기관) 회원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취급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업체(기관) 관리자 계정을 의미하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관리자 또는 위임자)이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별로 반드시 회원가입 하여야 합니다.</p> <p>업체회원 가입 시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을 승인합니다.</p> <p>개인회원은 해당업체에 소속 업무 담당자가 물품관리, 품질관리, 보고업무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입하는 사용자 계정을 말하며, 업체회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승인합니다.</p> <p>참고로, 개인회원은 인원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p>

질문	마약류소매업자(약국)이면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도 있는 경우 회원가입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p>마약류취급자 허가종별에 따라 시스템에서 각각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p>

질문	마약류취급자(업체)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업체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p>동일업체에서 법인 내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한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맞게 시스템 내 대표자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p> <p>다만,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신규로 받은 경우에는 허가사항대로 시스템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p>

질문	보고담당자로 개인회원 가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하나요?
답변	<p>법령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보고의무자입니다.</p> <p>다만, 부득이하게 마약류취급자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를 대신하여 보고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는 법령상 보고인명과 실제 보고한 담당자명이 함께 보고됩니다.</p>

질문	업체(기관) 회원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p>업체(기관) 회원가입은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얻은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위임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p> <p>회원가입은 대표자 또는 위임 1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법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p>

질문	대표자는 법인대표자와 업소대표자가 상이할 경우 누구로 가입해야 합니까?
답변	대표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질문	다수 공동대표자로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가 회원 가입하는 경우 대표자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p>마약류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주 대표자명으로 보고하거나 대표자 내 업무분장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업무책임이 있는 대표자명으로 보고합니다.</p> <p>예) 공동대표(①홍길동, ②임꺼정, ③심청)일 경우, 한명을 선택하여 작성 => 홍길동, 홍길동 외 2명 (두가지 형태로 작성)</p>

질문	동일법인소속의 의료기관이 업체 회원가입 시 법인번호가 필요한가요?
답변	업체(기관) 회원 가입할 때 법인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법인 내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로 구분합니다.

질문	의료기관이 면세사업자로 법인번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업체(기관) 회원 가입할 때 법인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 법인 내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로 구분합니다.

질문	업체 회원 가입시 필수 업로드 첨부파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p>각 마약류취급자 허가(개설)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수출입업·제조업·원료사용자·도매업자·학술연구자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 의료기관 :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의원·치과의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 의료기관 :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동물병원 :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 마약류소매업자(약국) : 약국개설등록증 ▶ 마약류취급승인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취급승인서

질문	한 업체가 마약류 원료사용자, 제조업자, 수출입업자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회원가입을 각각 해야 하나요?
답변	마약류취급자 허가종별에 따라 시스템에서 각각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회원가입시 마약류 취급자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허가번호와 일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개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회원가입 시 관할행정기관은 어디로 선택해야하나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은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및 개설허가(신고)증을 발급한 기관입니다.

질문	송도, 청라 등 자유경제구역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개설허가증 및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은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및 개설허가(신고)증을 발급한 기관입니다.

질문	회원가입 시 본인명의 휴대폰 아닌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어도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내 회원가입 메뉴에서 ‘휴대폰번호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휴대폰 인증 창에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휴대폰 명의자 분의 인적정보를 기입하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수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인증은 한 사람만 인증해도 되나요?
답변	다수의 대표자 중 주 대표자 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책임이 있는 대표자로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리약사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직한 경우 개인회원가입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업체(기관)가 달라지면 이전 사용하던 개인 계정은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 회원가입 하여야 합니다. 이전 계정은 탈퇴신청하거나 전 업체회원 관리자에게 퇴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마약류 취급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질문	공인인증서가 갱신되는 경우 시스템 절차는?
답변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후 공인인증서 갱신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담당약사가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미발급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뱅킹용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고객센터에 상담을 받은 후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업체 회원가입한 경우는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고, 업무담당자가 개인회원 가입한 경우는 업체 내 계정 관리자(업체 회원가입자)에게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